

# III.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보고

## □ 보고근거 및 필요성

### ○ 보고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지도·감독 등)
- 서울의료원 정관 제40조(정관의 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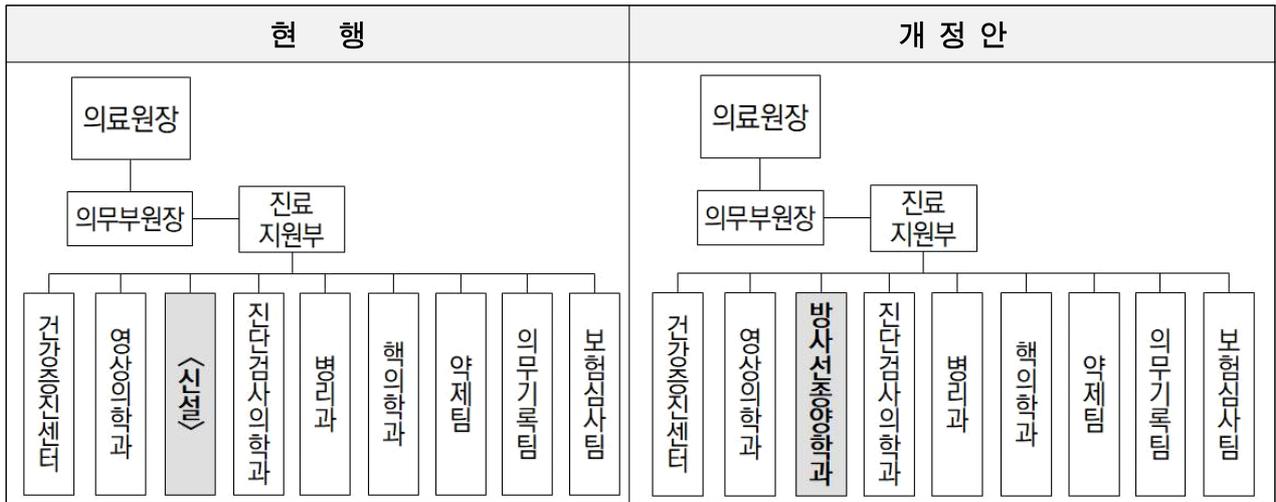
### ○ 필요성

- 旣 채용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역할 강화 및 협업 진료 증진 차원
- 안정적인 방사선종양학과 개소('25.12월) 위한 사전 행정 처리 차원

## □ 주요내용

### ○ 조직 정비 : 1개 진료과 신설(방사선종양학과 신설)

- (현 행) 6부 6실 1본부, 8센터 25진료과 28팀, 1지원단, 1연구소, 2위원회
- (개정안) 6부 6실 1본부, 8센터 26진료과 28팀, 1지원단, 1연구소, 2위원회



## □ 향후계획 (※ 추진과정에서 일정 변경될 수 있음)

- 서울의료원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: '24. 9월
- 정관 개정 및 시행 : '24. 12월